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62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립대학교는「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교직원 및 대학(원)생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업무·학업 몰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임

나. 2023년 2월 28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공모를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

나. 시설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 시설규모 : 지상 2층(연면적 520.12㎡)

○ 시설용도 :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

○ 준공일자 : ’17. 12. 15.

○ 개관일자 : ’18.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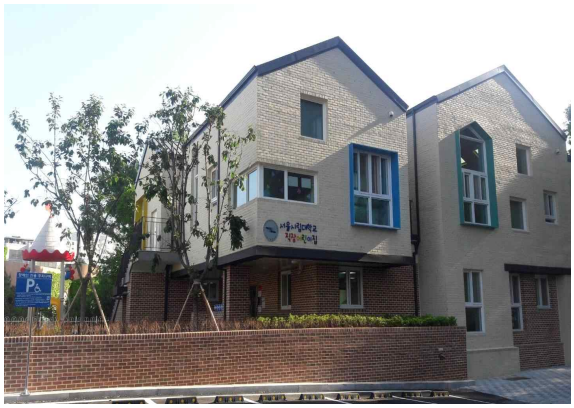

다. 운영개요

○ 정·현원 : 정원 65명, 현원 37명('22. 7월 기준)

※ 반별 정원은 보육수요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예정

○ 교 직 원 : 총 16명

- 원장, 보육교사 8, 보조교사 3, 조리원 2, 미화원 1, 사무원 1

○ 입소대상 : 서울시립대 소속 교직원 및 대학(원)생의 자녀

- 만 8개월 이상 ~ 취학 전 아동

라.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3. 3. 1. ~ '26. 2. 28.)

○ 위탁업무

-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시설·장비·부품의 구매 및 관리
-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예산 계획 및 집행
- 보육교직원 임용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 영유아 보호 및 교육

○ '23년 위탁예산 : 506,160천원(전액 인건비)

※ 어린이집 총 예산 : 803,088천원(지자체보조금 등 296,928천원 포함)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마.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18.1.8. ~ ’21.1.7.(한솔어린이보육재단, 신규위탁)

- 2차 : ’21.1.8. ~ ’23.2.28.(한솔어린이보육재단, 재계약)

바. 민간위탁 지속(재위탁) 필요성

○ 보육에 관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24조

>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22.4.19.)

○ '22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2.5.12.) : '적정' 의결

※ 작성자 :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인사팀 박혜원 (☎ 6490-6421)